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동장해, 경추 및 요추부 동통, 배뇨장애-두통 및 현훈 등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서 두통, 현훈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의 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척추운동장애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의 경우 급속 고정술후 요추부 운동범위 180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255-285도의 1/4이상, 1/2 미만 제한되고, 이에 수반되는 경추 및 요추부 동통 등 신경증상은 별개의 장애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제8급 제2호 척추에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에, 배뇨장애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척추운동장애에 파생된 장애로 취급하여 별개의 장애로 인정치 않았으나 척추운동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추손상으로 기능 장애가 남았을 때에는 각각 별개의 장애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명백한 요실금 등이 인정되므로 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함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국중립노무법원한술사사무소 (031-877-7822-3)

피재자는 00 탄광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4. 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2)제5-제1천추간 척추불안정, 3)제5-6, 6-7경추추간판탈출증, 4)신경인성방광, 5)두부 외상후 증후군으로 00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 후 1993. 11. 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신경인성 방광을 척추의 운동장애에 파생되는 장애로 보아 척추에 대한 장애등급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사 청구하였는 바 00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애진단 소견은 1)장애의 정도는 통증과 신경증상 및 운동범위 전반에 걸쳐 있으며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고, 장애의 정도는 보아 전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장애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저는 무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행방을 감추어 어음청구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최근에는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다른 것에 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지요?
A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닌 어음거래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단기의 날로부터 3년, ②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

서 작성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③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그 절차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할 날 또는 그 자가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와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그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만기일(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서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의 집에 와서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부락하는 걸 받아주지 않자 강제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폭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A 아무리 애인 또는 부부간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분명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는 수치스럽게나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에서 주의를 늦추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법적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대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결코 끊이

질 않을 것입니다.
*정작 부끄러워하면서(자기 조절 내지는 통제를 못한 점) 죄책감을 가져야 할 당사자들은 가해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00님의 대처에 따라 00님의 자존감을 회복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남자친구가 앞으로 다시는 00님을 물론이고 다른 여성에게도 그런 성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력은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부주의한 탓도 아닙니다. 00님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것이므로 자기 권리를 찾고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서 고소·고발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혼자서 고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임신 여부나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치매예방과 치료 ①

노인성 치매는 뇌신경의 파괴로 기억력 장애·일정한 언행·변 노실금·편지적 사고·실어증 같은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생장 발육 노쇠현상 등의 생리변화가 신장기능의 성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남자는 8세에 신기(腎氣)가 실해

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상처, 독거, 경제적 압박, 사회적 격리나 고독, 정신적 충격, 뇌동맥 경화, 뇌출혈, 뇌빈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의학적 원인으로서는 기허, 혈허, 심화항성(心火亢盛), 혈어기체(血瘀氣滯),간신의 음허, 심비의 양허(兩虛), 간울양환(肝鬱陽亢), 정수(精虛)의 결핍, 습담(濕痰)의 침구(心竅) 등의 많은 원인이 있다.
*노인성 치매의 임상적 특징은 그 병세가 완만히 진행되면서 지적 능력 상실과 함께 감정 성격 그리고 행위의 개변 상태가 같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망증이나 정광증(간질과 미친병) 또한 허로(虛勞:신체의 허약)로 오는 모든 질병) 등의 증세도 포함한다.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ljhrbanbang.co.kr

저서 성장하면서 치아가 다시 나오... 56세에는 간기(肝氣)가 쇠퇴하여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호르몬이 마르며 신장이 쇠약해져서 사람의 형체가 불똥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신장은 신체의 물을 주관하므로 오장육부의 정(精)을 간직하고 신체의 여러 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노인성 치매는 인체의 노쇠과정에서 신기의 쇠퇴와 함께 신체 외부의 각종 자극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강진욱



세면대, 비누,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한다.
* 의사의 진단 없이는 환자가 쓰던 안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자가 쓰던 수건 등은 삶아서 사용하고 소독약(알코올)으로 문손잡이, 전화기 등을 소독한다.
* 이후 결막염은 주로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며, 급성 결막염과 인후염(목감기)이 같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림프선이 붓고 열이 나게 된다. 결막염은 대개 한쪽 눈에만 나타나며 콧물, 가래 등이 분비물에 의해 전염되며 유행성 결막염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가지게 된다.
*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결막(흰자)에 작은 출혈이 생기면서 점점 커져서 결막하출혈의 양상을 나타내며 다른 증상은 유행성 결막염과 비슷한데, 회복기간이 보다 짧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여름철의 눈의 질환 - 결막염

유행성 결막염은 아주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발병 후 약 1-2주 동안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독이 안된 수영장, 문 손잡이, 전화기, 전철의 손잡이, 식당의 손수건 등을 매개로 전염되므로 유행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는 것이 좋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을 때는 다음의 것을 잘 지켜야 한다.
* 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세면대, 비누, 수건, 컵 등 직접 접촉하는 것은 따로 쓴다.
* 눈에 약을 넣은 후나 눈의 분비물을 닦아낸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안약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 않는다.
* 식구나 물기가 주의해야 할 사항
* 문손잡이나 전화기 등을 통해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므로 손을 눈에 닿지 않게 한다.
* 손을 자주 씻는다.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12월 결산법인입니다. 이번 8월말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시오. 참고로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좋아서 법인세 납부액이 있었습니다.
A 법인세는 원래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부담의 분산을 위하여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그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
*중간에납세액의 계산은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6개월간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등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직전연도에 납부세액이 있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X 6/ 직전사업연도 월수-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입니다. 금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인화된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며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던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재계산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서는 안됨)
*중간에납기기간 동안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전기·기계)전문 공사업은 '고은종합전기' 에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취급 공사

- ▶ 공장
▶ APT
▶ 빌딩
▶ 병원
▶ 상가
▶ 호텔
▶ 가로등
▶ 기타 전기공사
▶ 소방설비공사



공장확장으로 인한 부하설비 증가로 특별고압 자가용 수전설비 증설 공사 현장

고은종합전기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설계와 완벽시공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 두 열 대표이사

